

# 소장

원 고 1. 노 무 현

2. 노 건 평

피 고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안 병 훈

3. 우 종 창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의 소

1991. 11.

위 원고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최 일 숙

서울민사지방법원

귀 증

# 정 구 원 인

## 1.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가. 원고 노무현은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7개월여간의 판사생활을 거쳐 1978년부터 변호사로 일해온자이고, 1981년의 일명 부림사건, 1982년의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등을 시작으로 소위 시국사건을 변론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지역등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일해오거나 위 단체들을 지원하였고, 보다 폭넓고,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뒤 1991. 9. 국민의 정치적 여망인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통합에 동참하여 통합야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노건평은, 위 원고 노무현의 친형으로서, 고향인 경남 진영읍에서 농사를 지으며 비교적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나. 피고 조선일보사는 스스로 국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로서, 조선일보, 소년조선일보와 함께 월간조선, 가정조선등의 월간지와 주간조선을 발행하는 보도 출판회사이고, 피고 안병훈은 위 잡지의 편집인, 피고 우종창은 위 잡지의 기자입니다.

## 2. 피고들의 원고 노무현에 대한 불법행위

가. 피고들은 1991. 9. 진통을 겪던 야권통합 논의가 극적으로 성사되어 신민주 연합당과 민주당의 단일의 민주당으로 통합되고 유통합에 여러모로 기여한 원고 노무현(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초선의원이며 많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발탁되자, 이를 보도하는 조선일보 1991. 9. 17.자 인물평에 “고졸의 변호사 상당한 재산가”로 소개하는 등 편파적이고 애매모호한 문구를 발문으로 뽑아 기사를 게재한 것에 힘입어 위와 같은 발문을 뒷받침할 제반기사를 실어 주간조선의 판매부수를 늘리고, 원고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이미지를 훼손할 것을 공모 결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 우종창이 후술하는 바와같이 지사를 작성하고, 피고 안병훈은 이를 편집, 재구성하여 위 주간조선에 실어 11여만부를 판매하고 조선일보에 광고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을 범하였습니다.

(1) 피고 우종창의 취재

1991. 8 - 9월경 야권통합전 (구)민주당에 출입하는 기자 몇사람이 원고에게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는데 사실이냐고 묻기에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한달뒤 250억설이 있다며 또 물어오는 기자가 있어, 원고는 그저 정치인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보다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뒤, “주간조선에 청문회 스타 정치인이 요트를 가지고 있다.” 는 기사가 실렸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확인도 하지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어느날 피고 우종창이 찾아와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므로 원고는 성심껏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원고의 결백을 설득하기 위해서 불쾌한 감정을 억제하며 온갖 사실을 모두 다 설명했고, 등기부동본까지 발급받아 주는 한편, 피고 우종창이 조사했다는 부동산 목록에 같은 부동산을 원고의 형과 형수가 각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증복 계산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피고 우종창은 경남 진영읍에까지 가서 원고 노건평을 만나 조사한뒤 원고에게 보도할만한 특이한 점이 없다고 말하여 원고는 위 피고를 믿고 좀더 확실한 결백을 확인해 두고 싶은 마음에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돈 2천만원을 받았다가 들려준 이야기, 남은 선거자금을 재야단체에 기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취재내용이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2) 기사의 내용

위와같은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취재당시에 기사화되지 않기로 한것을 가지고, 피고 우종창은 원고가 민주당 대변인이 되고 난뒤 “통합야당 민주당 대변인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왜곡 보도 하였습니다.

(가)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는 부분

피고 우종창은 원고에 대한 취재를 통해 원고가 갖고 있는 재산은 여의도 미성아파트 한채, 콘도회원권 하나, 부산대연동의 택지 40평, 형의명의로 되어 있는 진영읍의 땅 120평이 전부이고 이는 모두 공직자 재산 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소문의 형식을 빌어 “정가의 분위기는 .... 노의원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얘기가 1년전부터 파다했으며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노의원의 이미지와 실제모습이 같지 않다는 말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당시 정가에 나온 얘기 는 노의원이 겉으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액에 달하며”라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소문을 뒤받침할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즉, 요트동호인 10여명을 모아 그 클럽의 회장을 맡은 사실을 들어 “부산요트클럽 결성, 회장에 앉아”라고 소제목을 뽑고, 회원이 하는 요트공장을 도와 준것을 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요트공장을 차려주고 요트를 만들게끔 하였다.”고 하였으며 당시 요트동호인들과 크루저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 가 유야무야된 사실을 “올림피아라 이름 불인 8인승짜리 크루저도 한척 만들었다.”고 왜곡하였고, 원고의 요트취미를 맘린 동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변호사들이 농민의 아들에게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 취미”라고 총고 하면 “재미가 보통이 아니다”며 회원으로 가입할것을 권유하고 다녔다. 고 허위보도하였습니다.

또, 85년 당시 콘도미니엄은 명성사건이후 투기나 부의 과시수단이 되기는 커녕 실수요자도 없었고, 원고가 구입한 콘도회원권은 18평이란 규모의 가장 작고 저렴한 것이었음에도 “당시로선 고급에 속했던”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고 하여 위 재산가란 가설이 사실인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노건평을 후술한 제3항에서의 불법행위 내용과 같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원고가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상당부분 대줌으로써, 부동산투기를 공동으로 했다는 인상을 조장하고 있는바 피고 우종창 은 “노의원의 재산과 관련해 눈여겨 볼 부분은 그의 형 노건평씨(47)의 재산이다..” “.... 건평씨의 재산은 .... 노의원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평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 노의원의 돈이 일부 투자됐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였고. 전혀 근거가 아님에도 “88년 진영읍에 잡종지 1천 5백평을 살때도 노의원의 돈이 건너갔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부산의 사상공단 부지 98평을 팔아 그중 2억 5천 만원을 형이 진영읍내에 땅을 사는데 빌려주어 형이 그중 120평을 원고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와 관련한 원고의 재산으로 채권 2억 5

천만원과 땅 200평(120평을 과장한것)이 있는 것으로 이중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여 피고 우종창은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이고 그것도 부정하게 모은 것인양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나) 원고의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에 관한 부분

피고 우종창은 정가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들어 “인권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상당부분 과장 돼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산지역에서 81년이후 노동시국사건등 인권관련 사건을 꾸준히 해음으로써 얻은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즉, 원고가 판사직을 그만둔것은 인생관 내지 세계관에 따른 복합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다른 여러이유와 함께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한가지 요인이었던 것을 피고 우종창에게 솔직히 표현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판사직을 사퇴한 것은 ... 관료주의 체질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 ‘돈을 벌기위해서’ 였다.”라고 기술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발문을 뽑음으로서 원고가 오로지 돈을 벌기위해 판사직을 그만둔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 “77년 9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재산을 일구게 된다.”고 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부도덕하게 재산을 형성한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또, 피고 우종창은 ‘부산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서 “부산에서의 첫 시국사건 재판 (부림사건을 지칭함)이어서 변호인을 물색하기 어려웠다. 선배 변호사가 노의원에게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노의원은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왜 맡아야 하는냐’며 고사했다.

겨우 그의 마음을 달래 5인의 변호인증 한명으로 참여시켰다.

재판이 끝난뒤 그는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는 맡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85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때 두번째로, 시국사건 변호인이 되었는데 이때도 이름만 걸어놓았지 변론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허위보도하며 자신의 허위사실 작성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내용이 진정 ‘부산의 한 변호사’의 말이라면 부림사건의 발생년도를

81년에서 82년으로 잘못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 부림 사건 변론에서 당시 난처한 처지에 있던 선배변호사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열심히 변론하였으며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서는 여러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배우려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원고는 실제로 부림사건 관련 학생들이 석방된 이후 84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 인권변론을 맡아 세화상사, 삼도물산, 동국제강, 동서버스, (주)통일 등의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산재사건 및 학생, 노동자등의 구속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고, 84년초에는 공해문제 연구소를 발족하였으며 같은해 9월부터 변호사 사무실내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자비로 설치, 운영하였고 사건 변론시 형편이 어려우면 수임료를 받더라도, 인지대를 포함하여 기십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그 돈도 상담소에서 자체관리하여 부산지역 인권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당시 원고는 공안기관으로부터 악명높은 변호사로 철저한 감시를 받아왔고, 구속영장도 여러번 청구되어 마침내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우종창은 원고가 인권변론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름만 팔아 먹고 있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고 그 근거를 익명의 한 변호사의 말에 듬으로써 피고 우종창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다)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의 ‘재미’ 부분

피고 우종창은 원고가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말도 있었다.”라고 정가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술하고, “.... 노사분규 과정의 ‘재미’도 약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소문은 노의원이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노와 사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허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우종창의 취재에 응하여 돈에 대해선 까다롭고 깨끗하게 처신해 온 예의 하나로, 사용자로부터 돈 2천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을 이야기하며 “돈 2천만원을 거쳐 삼키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무슨 부정을 해서 부자가 되었겠냐”고 반문한 적이 있는바 피고 우종창은 위 사실을 기사화하면서 원고가 마치 노사양측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원고가 밝힌 2천만원 얘기는 실제하는 것중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여 실제로 상당한 재미를 보았고, 이것이 원고의 재산형성에 적지 않은 부분이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명예를 가장 핵심적으로 훼손한 부분입니다.

(라) 남은 선거자금으로 아파트를 계약하였다는 부분

원고는 13대 총선을 치를때 부산의 동료변호사들과 고교동기들이 후원을 해주었고, 인권단체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았으며 선거를 치르고 남은 1억원 남짓증 일부는 재야 단체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의 돈을 들려주었고, 여의도의 미성아파트를 구입하는데는 1천만원정도만 들어갔고 나머지 대금은 부산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우종창은 인권단체로부터 선거자금 후원을 받았고 선거자금중 “남은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이라고 소제목을 달므로써 마치 원고가 인권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는데 쓴것처럼 허위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주간조선의 기사구성

무릇 인쇄물의 편집은 관련기사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기사의 크기, 제목, 배열, 발문, 삽화의 내용과 크기 사진의 선택과 배치 및 해설등에 따라 기사 본래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있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며, 대다수의 독자들은 어느 한 기사를 읽게 될때 일정한 선입견과 기대를 갖고 접근하기 마련이며 선입관과 이미지는 표제와 소제목, 중요 문구로 이루어진 발문등의 강조된 표현이나 시각적 형상물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기사내용이 압축된 문구나 형상물과 관련이 없더라도 독자들은 그러한 문구나 형상들로 부터의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고 확인하려 하기때문에, 모든 기사의 편집은 기사내용을 가장 간결하고 압축된 형태로 전달해야함은 물론 그 자체의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조선일보사 및 동 안병훈은 이런 편집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다음과 같은 소외 김성인의 풍자 만화를 2면에 걸쳐 게재하여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허위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독자로 하여금 부당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가) 잡지의 표지

잡지의 표지 중단의 흑갈색 바탕위에 희색 고딕의 특호활자로 ‘노무현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조하여 마치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로 판명이 난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나) 잡지의 목차

잡지의 제5면 목차에 ‘노무현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재하고, 세로 5cm 가로 5cm의 컬라사진를 게재하여, 위 기사가 상당히 비중있는 것으로 강조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고,

(다) 기사의 표제와 소제목

위 기사의 표제를 ‘밀착취재’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고 붙여서 기사내용이 원고 자신에게 상당히 가깝게 접근하여 취재한 것이고 따라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소제목을 “노의원의 재산상당하다는 얘기, 1년전부터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아” “82년 요트 동호인 10여명과 함께 부산요트크럽 결성 회장에 앉아”, “형 건평씨의 부동산 투기에 노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 “13대 총선때 YS가 2억원 지원 남은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으로 붙여서, 독자로 하여금 소제목만 보아서도 원고가 요트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재산이 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했고, 선거자금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확신을 갖게하여 원고의 정치적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라) 발문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퇴한 것은 관료주의 체질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는 말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발문하여 큰 활자로 게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위 발문만을 읽더라도, 원고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였기 보다는 돈에 거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인상을 갖게 하였고,

#### (마) 사진

90년 2월 임시국회 당시 원고가 소위 김영삼에게 인사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뒤, 당시 사진을 원고와 소외 김영삼이 당을 갈려선 입장에서 김정길의 원과 함께 의례적 인사를 한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의 해설기사로 “민자당 통합에 반대한 노무현의원이 90년 2월에 열린 임시국회때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을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여 ‘민자당 통합에 반대한’의 표현과 ‘찾아가’를 대비시킴으로써 원고가 2중인격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 (바) 풍자만화

피고 안병훈은 소외 김성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넓은 방안에서 역도와 아령을 갖추고 개걸스럽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침대위에서 발가벗은체 발각되어 언론의 각종 카메라 앞에서 어쩔줄 몰라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듯이 풍자하여 그리게 하여 2면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습니다.

#### (4) 소결론

위와같이 잡지기사의 취재과정, 내용, 체제, 구성, 풍자만화등을 종합할때 피고들의 전술한 기사개재는 원고의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크게 저하시키고 원고의 명예감정을 해치는 고의 위법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 다. 신문광고

광고는 기사의 작성 및 편집과는 독립되어 보다 상업성이 짙은 것이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구매요구를 충동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원고와 같이 대중에게 저명하거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기사는 특히 상품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기사의 진실성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의 주요부분을 구성하여 광고를 통한 이미지 전달이 가능한바, 피고들은 주간조선의 판매부수를 확장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아래 ‘노무현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을 광고의 내용으로 하여 1991.

9. 27. 자 조선일보 23면의 광고란에 세로 1호의 고딕체활자로 광고하고, 같은달 29일자 같은 신문 10면의 광고란에 고딕체, 큰활자로 광고하고, 통상과는 달리 같은달 28일자 같은 신문 5면 통단 광고란에는 3단 광고 크기의 풍자만화와 함께 “통합야당 대

변인 노무현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을 초특호 헤드라인 활자로 광고 함으로써 위 광고들을 일견한 독자들에게 원고가 마치 상당한 재산가인 듯한 부정적이 고 왜곡된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라. 결 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취재를 통해, 원고는 별반 가진 재산도 없고, 인권변호사로서 열 성적으로 활동하였고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재미’를 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전술한 바와같이 잡지와 신문광고에의 계재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원고가 마치 상당한 재산가이며,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것은 상당부분 것짓이며, 노사양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먹는 부도덕한 정치인이고, 심지어 부동산투기까지 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이를 믿게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명예감정을 심히 해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피고 안병훈, 동 우종창의 사용자로서 피고 안병훈, 동 우종창과 함께 후술하는 바와같이 위 잡지의 기사 및 광고의 계재로 말미암아 입게 된 원고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3. 피고들은 원고 노건평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우종창은 원고 노무현이 재산을 모은 과정을 기술하면서 원고 노건평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계재하였는바 “건평씨는 고향인 진영뿐 아니라 부산, 마산, 창원, 창녕등지의 논, 밭, 임야, 잡종지, 대지등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건평씨는 이른바 부동산 투기로 큰돈을 벌었다.”, “뿐만아니라 건평씨 부인도 한때 수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기술함으로써 마치 원고 노건평이 악덕 부동산 투기꾼이고 이를 위해 자신의 처 명의까지 이용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마치 원고 노건평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정치적 후광이나 금전적 도움을 상당히 받은것처럼 보도하여 위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4. 손해배상의 책임범위

##### (가) 위자료

원고 노무현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깨끗하고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당내에서나, 국민들에게서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1992년에 있을 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입후보할 계획에 있는 자이고, 원고 노건평은 원고 노무현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며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자인바, 피고들의 이사건 기사 및 광고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다소나마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 노무현에게 우선 금 30,000,000, 원고 노건평에게 금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노무현은 추후 그 금액을 확장 청구하겠습니다.

#### 5. 사죄광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사건 기사 및 광고의 계재로 위 잡지의 독자들은 물론 일般인들에게까지 원고 노무현이 마치 상당한 재산가이며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것은 상당부분 거짓이고 돈에 욕심이 많으며 노사양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먹은 부도덕한 정치인이고 심지어 부동산 투기꾼이기 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하여 그동안 '아스팔트 변호사'라고 불리며 노동현장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했고, 5공화국에 저항하고 6월항쟁의 선두에 나섰고, 뚜렷한 정치소신을 가지고 깨끗하고 진실하며 원칙적인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원고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노무현의 훼손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하여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이 사죄광고를 하고, 이사건 판결문을 각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6. 결 론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사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법방증입

갑제 1호증 주간조선 1991. 10. 8. 자 1171호

갑제 2호증의 1. 조선일보(1991. 9. 27. 자)

2. " (1991. 9. 28. 자)

3. " (1991. 9. 29. 자)

그외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